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주민복지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 -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21. . 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개정이유

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. 12. 31일에 만료됨으로 기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9조의2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

3. 조례 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기타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10.06.~2021.10.26. 기간 중 의견없음

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마. 규제영향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바. 기타 관련사항 : 해당없음

사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 통과(2021.11.11.)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의2 중 “2021. 12. 31 일”을 “2026. 12.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 의 존속기한은 <u>2021. 12. 31</u> 일 로 하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 ----- <u>2026. 12. 31일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주민복지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167

관 련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